

4

공공예금 통장 이자수입 세입처리 미실시

□ 관련규정

-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13조(세출예산 집행기준) [별표4]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방회계법에 따라 해당 실과에서 직접 세입 조치하도록 규정

□ 지적사항

사례1> '22년 발생한 사무관리비 이자 발생액 00,000원에 대하여 해당 실과에서 직접 세입 조치 누락

사례2> '22년 발생한 이자 발생액 00,000원에 대한 세입 조치를 당해 연도에 처리하지 않고 회계연도 이후 세입 조치

□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

- 회계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내 세입 조치가 누락 되지 않도록 유의